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6. 11 선고 2020가단29951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오른 담당변호사 양석환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동욱

변 론 종 결 2021. 4. 30.

판 결 선 고 2021. 6. 11.

주 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4지분에 관하여 2019. 10. 30.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140,632,796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40,632,796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9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115,494,440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양수금 채권

1) 원고는 주식회사 D이 C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330602호로 제기한 양수금 소송에 원고의 승계참가인으로 참가하여 2016. 5. 26. ‘C 등은 연대하여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115,494,440원과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이라 한다).

2) 이 사건 변론종결일(2021. 4. 30.) 현재 이 사건 양수금의 원리금 채권액 합계는 140,632,796원1)

이다.

나. 상속재산 분할협의 및 이후 경과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E 소유였는데, E는 상속인으로 C, F, 피고, G을 두고 2019. 10. 30. 사망하였다(이하 E를 ‘망인’이라 한다). 2) C, F, 피고, G은 2020. 3. 3.경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으로 상속하는 것으로 분할협의를 하였고, 피고는 2020. 4. 17. 단독으로 2019. 10. 3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피고는 2020. 4. 17. 다음과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각 지분에 관하여 각 2020. 3. 30.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일부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쳐주었다. 즉, F, G에게는 각 20/100지분, H, I에게는 각 16/100지분.

4) 분할협의 당시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부동산 가액은 974,700,500원이다.

다. C의 무자력

위 분할협의 당시 C은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분인 1/4지분 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던 반면, 소극재산은 위 상속재산을 초과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다른 사람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무자력 상태였던 C이 위와 같은 분할협의를 통해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중 1/4지분을 포기한 것은 이 사건 양수금 채권자인 원고를 포함한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 C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1/2지분은 망인으로부터 포괄유증받은 것이므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2004. 5. 12. ‘망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와 손자 H에게 유증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공정증서에 유증재산을 이 사건 부동산으로 특정한 점, 위 공정증서에 당시 망인의 근저당채무(갑 제2호증)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 위 공정증서는 망인 사망 15년 전에 작성되었고, 이후 망인의 재산상태가 변동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1/2지분을 특정유증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상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1/2지분을 유증으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또한 C이 2004년경 망인으로부터 2억 4,000만 원을 증여받은 특별수익자이고, 위와 같은 특별수익을 고려하면 C은 사실상 상속받을 재산이 없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분할협이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여분이나 특별수익 등이 있는 경우에는, 지정상속분이나 법정상속분에 기여분이나 특별수익 등을 반영하여 구체적 상속분을 정하게 되고(민법 제1008조, 제1008조의2 참조), 상속재산 분할협이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도 위와 같은 구체적 상속분을 기준으로 하여 재산분할결과가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하는지 살펴보아야 하며, 이때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을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C의 특별수익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나. 원상회복의 방법

1)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다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 가액 상당의 배상을 명하여야 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를 마쳐주었으므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에 의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부동산 중 1/4지분의 시가가 238,675,125원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으로 원고의 양수금 채권액은 이에 미치지 않는 140,632,796원이므로 위 140,632,796원이 가액배상의 범위가 된다(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으로 상속하면서 부담하게 되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2,000만 원을 공제하여도 가액배상액에는 영향이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와 C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분할협의를 140,632,796원²⁾의 범위 내에서 사행행위로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40,632,79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가액배상금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15,494,440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구한다. 그러나 가액배상금은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액 한도 내에서 확정금으로 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고, 위 청구금이 피보전채권액을 초과하므로 피보전채권액을 가액배상금으로 인정하되,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인정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허명욱

별지 목록

1.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위 지상

철근콘크리트 슬래브지붕 3층

근린생활시설및 주택

1층 46.80㎡

2층 46.80㎡

3층 46.80㎡

지층 46.80㎡

옥탑 5.76㎡

용도 지층-근린생활시설

1층-근린생활시설

2층,3층-주택

2. 서울특별시 양천구

대 99.5㎡

1)= 115,494,440원 + (30,000,000원×연15%×2,039일)

2) 원고는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으로 ‘115,494,440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5. 10. 1.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청구하고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를 확정금으로 환산하면 140,632,796원이다.